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인식 의원 발의〕

의안번호	2352

발의일자 : 2023. 5. 31.
발 의 자 : 이인식 의원
찬 성 자 : 고성미 의원
엄샛별 의원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른 내용 정비 및「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반영하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통해 여성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다.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안 제4조)

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안 제5조 ~ 안 제12조)

마. 사업비 지원 및 2차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및 제14조)

바. 관련정보의 제공 및 비밀준수 의무(안 제15조 및 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2) 「지방자치법」 제13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23. 6. 1. ~ 2023. 6.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성 지역연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르는 재

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폭력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폭력의 위기에 처한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기관 또는 시설
2.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3.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 기관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시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의 심의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조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2차 피해 방지)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피해자 정보 등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조 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제정) 2010.08.19 조례 제 618호
(일부개정) 2011.03.18 조례 제 661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문개정) 2013.02.26 조례 제731호
(일부개정) 2018.11.09 조례 제996호
(일부개정) 2019.12.31 조례 제1076호
(일부개정) 2022.08.15 조례 제1249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천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계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 ·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 · 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 여성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구청장은 제4항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아동 ·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 ·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 · 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금천구 아동 · 여성 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목적)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 · 여성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 연계와 자원 · 정보교류 기반 마련
3.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

제6조(지역연대의 기본원칙) ① 지역연대의 기능은 지역 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 인적 물적 제도적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② 지역연대의 구성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참여와 연대를 보장해야 한다.

③ 지역연대의 운영은 조직과 의사결정절차에서 구성원의 의견 교환과 합의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2장 지역연대의 구성

제7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은 아동 · 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아동 · 여성 보호 관련 담당 국장인 복지가족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11.9., 2019.12.31.>

1. 금천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계 기관 또는 시설
3. 아동보호 관계 기관 또는 시설
4. 청소년상담지원시설
5.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6. 아동 ·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7. 교육청, 초 · 중 ·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8.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 · 사법 관계 기관
9. 지역주민대표
10. 학계전문가
11. 그 밖에 아동 · 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는 제2항 2, 3, 6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고 협의 · 조정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 · 여성 보호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업무
5. 사례관리팀 회부사안
6. 제3조제4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제9조(운영위원회 위원장)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운영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두며, 부위원장은 복지가족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9., 2019.12.31.>

④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연대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행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의 연임 · 재위촉 및 결원의 충원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11조(운영위원의 해촉) ① 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역연대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2조(운영위원회 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9., 2022.8.15.>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한다.

1. 운영회의록 작성 · 보관

2. 지역연대 참여기관 정보교류체계 관리

3. 운영위원회와 사례관리팀간의 연락

4. 지역연대 웹사이트 관리

5.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제13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사안 유형별 또는 특정 사안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사례관리팀 관련 업무를 담당할 소위원회는 구성해야 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 중 해당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로 운영위원회가 위촉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사항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보고한다.

제14조(사례관리팀의 구성) 지역연대에는 제7조제2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사례관리팀을 둔다.

제15조(사례관리팀의 업무) 사례관리팀은 지역내 아동 · 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16조(사례관리팀 팀원) ① 제7조제2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여성아동 보호 및 복지담당 부서장 또는 팀장, 간사, 전문가를 사례관리팀원으로 한다.

② 사례관리팀장은 운영위원회의 간사가 겸한다.

제3장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

제17조(협력체계의 구축) 지역연대는 지역사회안전망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
2. 아동 · 여성보호 관계 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구축

제18조(위기관리) 지역연대는 아동 ·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성폭력 · 가정폭력 위기 · 피해 여성 · 아동 긴급개입구조
2. 성폭력 · 가정폭력 위기 · 피해 여성 · 아동 사례관리 및 후속조치

제19조(예방지원) 지역연대는 아동 · 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 여성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2.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안전지표관리

제20조(연구 및 조사) 지역연대는 아동 · 여성폭력 위기관리와 예방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아동 · 여성 보호방안 연구
2. 지역 내 아동 · 여성 위험요인과 특성 조사
3. 지역 내 아동 · 여성폭력 피해 및 가해실태 조사

제4장 회의운영

제21조(운영위원회 정기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상하반기별 1회 개최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제22조(운영위원회 임시회의) 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23조(운영위원회 회의안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건으로 심의한다.

1. 중앙정부기관에서 공공전달체계를 통해 하달한 안건
2. 지역연대참여기관이나 지역 내 기관단체에서 지역현안으로 제시한 안건
3.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 내 기관단체 실무자, 지역주민이 지역현안으로 건의한 안건

4. 사례관리팀에서 제안한 안건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성립과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가부동수인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5조(사례관리팀 회의운영) 사례관리팀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26조(회의기록과 보고) ① 운영위원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운영위원회 간사가 회의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한다.

② 사례관리팀 회의는 사례관리팀장이 회의일지를 작성 · 보관한다.

③ 사례관리팀장은 회의결과를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보고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역연대 참여기관과 의결내용과 관련된 지역 내 기관 · 단체에 공문으로 통지한다.

⑤ 지역 내 기관단체나 지역주민이 제기한 안건이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을 경우 그 회의결과를 해당 기관 · 단체나 주민에게 공문으로 통지한다.

제5장 행정사항

제2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 ·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 ·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9조(필요경비 또는 수당) 구청장은 지역연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운영위원과 사례관리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618호, 2010.08.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거법률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근거법률인 제1조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까지는 제정 전 근거법률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부 칙(제661호, 2011.03.18)(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731호, 2013.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금천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금천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의 위촉직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
③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시행한 결정, 처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제996,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8.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여성보육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②부터 ⑯까지 생략

부 칙(제1076호, 2019.12.31.)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복지가족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복지가족국장”으로 한다.
③부터 ㉒까지 생략

부 칙(제1249호, 2022.8.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
⑬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⑭~⑰ 생략

관 계 법 령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86호, 2018. 12. 24., 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